

[별표 2]

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

| 등급분류   | 평가 배점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I 등급   |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미만           |
| II 등급  |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이상 ~ 800점 미만 |
| III 등급 | 화재위험성 평가 800점 이상           |

※ 비고

- 화재위험성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
  - 평가방법 :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위험성 평가표 활용
  - 배점기준 : 정량평가(20점) × 정성평가(50점) = 1,000점